양돈협회 양돈농가 상담 코너

작년 본회에서 2005년부터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양돈농가 상담이 매달 10건이 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들 상담건수 중 양돈농가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선별하여 개제코자 한다. –편집자 주 –

◎ 상담사례 1 : 전북고창에서 문의한 사항으로 톱밥 영세율에 관한 문의가 있었다. 톱밥 영세율은 지난 4월부터 양돈장에서 사용하는 톱밥에 어떻게 적용되어 시행되는지에 대한 문의였다.

양돈장에서 사용하는 톱밥은 직접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다. 즉 세금을 납후한 후 다시 환급받는 것이다. 환급대상은 양돈농가이다. 농 · 축산, 임 ·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축산용 톱밥이 포함된다. 신고절차는 각 분기별로 분기말에 부가세 환급대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농어민 확인서와 함께 세무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환급대행 수수료를 환급세액의 100분의 5를 내야 한다.

◎ 상담사례 2 : 충남논산의 농가로써 SCB공법을 이용해 분뇨를 처리하고 있었다. SCB공법을 통해 침출수를 모으고 있고 이를 해양투기 하려고 했다. 수거업체에서는 고액분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고액분리기 설치 계약도 없다하여 뇨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한다. SCB공법에 의한 침출수에는 이물질이 없다. 이에 업체에 대한 항의 문의였다.

바다에 버리는 축산분뇨에서 이물질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로 고액분리기를 설치하거나, 고액분리기 설치 계약을 한 농가에 대해서 수거업체가 수거해 가기로 했다. 그러나 본 농가는 고액분리기가 필요없다. SCB공법에 의해 톱밥 여과상을 통해 분뇨가 걸러지고, 이물질이 없는 뇨가 별도로 모아지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과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조치토록 하겠다. 이에 수거업체에서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이물질이 없는지 직접 확인할것을 약속했다.

<양돈농가 상담코너 – 양돈농가들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을 양돈협회에서 상담해 드리고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문의 : 대한양돈협회 지도부 전화 : 02–581–9751~4, 팩스 : 02–581–9768>